

의안번호	2211666
의 퇴 인	김미애의원
회 답 일	2025.8.22.
추 계 번호	25D3870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계인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·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38억 5,300만원, 2028년 243억 3,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81억 8,300만원(연평균 96억 3,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공동주택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 (안 제13조제6항 신설)	23,853	24,330	—	—	—	48,183	9,637

주: 1. 공동주택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(안 제13조제6항 신설)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함
 2. 본 추계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하고 1989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중 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의 70%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제6항 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계인이 모든 층에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3조제6항 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)	0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제안이유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하고 1989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중 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의 70%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- 소방청에 따르면, 1992년에 아파트의 스프링클러설비 적용기준을 도입하여 해당 시점 이후에 건축된 11층 이상인 아파트로 한정하고 11층 이상의 층에 적용하였고, 이후 점차 강화되어 2018년에는 6층 이상인 아파트의 전층에 적용하고 있음
 - 따라서 1992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개정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
 - 다만, 통계청의 「주택총조사」에서 건축연도가 1979년 이전, 1980~1989년 이전, 1990~1999년 이전으로 구분되어 있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설비 적용기준이 도입된 1992년 이전으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1989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개정안에서 규정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
 - 또한,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용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한국

토지주택공사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례를 참고하여 가구당 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로 한정

-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에 노후 영구임대주택 14,935호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위하여 13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해당 주택의 평균 면적은 27.2제곱미터미터
- 다만, 통계청의 「주택총조사」에서 아파트 면적을 20제곱미터미터 이하, 20~40제곱미터미터 이하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40제곱미터미터 이하로 한정하여 적용
- 한편,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은 소방청의 2019~2020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(고시원, 산후조리원)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70%로 가정
- 소방청은 해당 사업 수행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소유주에게 약 30%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, 본 추계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국가 지원율을 70%로 가정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
□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- 다만, 부칙에서 개정안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과 2028년에만 발생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1989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중 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의 70%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

□ 본 추계에서는 연도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수량에 평균 설치비용,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3%	1.9%	2.0%	2.0%	2.0%	2.0%

국가 지원율을 곱하여 산출

- **(설치 수량)** 총 설치수량은 70,882개이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동안 설치 완료
 - 통계청의 「주택총조사」에 따르면, 2024년 기준 1989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중 면적이 40제곱미터미터 이하인 총 85,817호이고 앞서 언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노후영구임대주택 14,935호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총 70,882호
 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2년 동안 50%씩 매년 35,441개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

[표 2]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수량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개)

	2027	2028	2029	2030	2031
설치수량	35,441	35,441	-	-	-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**(평균 설치비용)** 2027년 961,473원, 2028년 980,703원으로 추정
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노후영구임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사례를 참고하면, 총 사업비 138억 200만원을 대상 아파트 수 14,935호로 나누면 평균 설치비용은 2025년 기준 924,138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 적용

[표 3] 평균 설치비용 추정: 2025~2031년

(단위: 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평균 설치비용	924,138	942,621	961,473	980,703	1,000,317	1,020,323	1,040,72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계인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·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38억 5,300만원, 2028년 243억 3,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81억 8,3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설치수량(a, 개)	35,441	35,441	-	-	-	70,882
평균 설치비용(b, 원)	961,473	980,703	-	-	-	-
추가재정소요 (=a×b×70%, 백만원)	23,853	24,330	-	-	-	48,18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하고 1989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중 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의 70%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